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4가합55375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한국웨스트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6. 12. 22.

판결 선고2017. 2.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5,054,240원 및 그 중 1,425,035,125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7.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7.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169,789,0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69,789,0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한국웨스트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한국웨스트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3. 20. 접수 제179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아래 대출금을 각 대출받았다.

2011. 3. 25.	2억 7,000만원	2012. 3. 23.	D	3억 원	2015. 3. 20.
2011. 12. 12.	3억 6,000만 원	2012. 12. 12.	E	4억 원	2014. 12. 11.
2011. 12. 22.	12억 6,000만 원	2021. 12. 22.	F	14억 원	
2012. 12. 11.	5억 1,000만원	2013. 12. 11.	G	6억 원	2014. 12. 10.

2) 피고 A는 2014. 5.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1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위 법원은 2014. 6.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해 8.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3) 우리은행은 2014. 5. 22.경 원고에게 피고 A가 2014. 5. 21.자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8.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483,177,358원(275,205,600원+366,465,402원+322,375,400원+519,130,9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58,142,233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 58,142,233원에 대한 위 채무변제일에 대한 이자 상당액 19,115원(58,142,233원×12/100×1/365)이 확정손해금으로 발생하였다.

4) 위 1)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이다.

나.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B은 2014. 1. 27. 무렵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1	광주시 H 104동 1402호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2	광주시 I 대 74㎡	2014. 3. 13. J 대 6㎡(아래 순번 3번), K 대 1㎡ (아래 순번 4번)와 합병되고, 2014. 5.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됨
3	광주시 J 대 6㎡	
4	광주시 K 대 1㎡	
5	광주시 L 대 3㎡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6	광주시 M 대 258㎡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7	광주시 N 대 2㎡	
8	광주시 O 대 169㎡	2014. 2. 10. P 대 76㎡(아래 순번 9번)와 합병되어 면적이 245㎡가 됨
9	광주시 P 대 76㎡	위 O에 합병됨
10	광주시 Q 대 214㎡	2014. 2. 11. R 대 36㎡(아래 순번 11번)와 합병되어 면적이 250㎡가 됨
11	광주시 R 대 36㎡	위 Q에 합병됨
12	충북 괴산군 S 답 1,369㎡, T 답 1,253㎡, U 대 975㎡, V 전 955㎡, W 전 3,768㎡	각 11분의 2 지분

2) 피고 B는 2014. 1. 27. 자신의 모친인 피고 C에게 ①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② 별지 제1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③ 위 1)항 기재 순번 7번 토지 중 10분의 4지분을 319,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2014. 3. 3. 위 각 지분 및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우리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7. 20.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 순번 2 내지 11번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의 2014. 1. 27.경 피담보채무액은 6억 5,000만 원이다.

4) 피고 B이 위 2)항과 같이 피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등을 매도한 후 위 1)항 순번 2 내지 6번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4. 4.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4. 4. 30.에, 순번 7번 토지에 관하여는 2014. 4. 8.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4. 4. 8.에, 순번 8, 9번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4. 8. 11.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4. 8. 11.에, 순번 10, 11번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4. 8. 1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4. 8. 25.에 각 위 우리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피고 B는 2013. 8. 14. 소외 X(Y회사)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X이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 B이 그 대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6)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2013. 8. 19. 착공신고되었고, 2013. 10. 30. 기초 철근배근공사가, 2014. 3. 15. 지붕 철근배근공사가 각 완료되었으며, 2014. 4. 21.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다.

7)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피고 C는 2014. 4. 25.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2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 한국웨스트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 한국웨스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웨스트'라 한다)는 피고 A를 상대로 2013. 6. 25.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피고 A에 공급한 부품대금 36,321,52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2. 20. '피고 A는 피고 한국웨스트에게 36,321,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4308호), 위 지급명령은 2014. 3. 19. 확정되었다.

2) 피고 한국웨스트는 위 부품대금 36,321,524원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4. 3. 11. 피고 A가 하나은행 등 은행 4곳과 소외 주식회사 에스에스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1285).

3) 피고 B은 2014. 3. 20. 피고 한국웨스트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3. 20. 접수 제17969호로 채권최고액 3,7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한국웨스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4) 한편, 피고 한국웨스트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이후인 2014. 3. 24. 위 2)항의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한국웨스트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호, 을다 제1, 7, 8, 9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A, B: 자백간주

2.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1,425,054,240원(대위변제금 잔액 1,425,035,125원+확정손해금 19,11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25,035,125원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우리은행에 위 피고들의 채무를 변제한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4. 1. 27.자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2014. 1. 27.자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B이 2013. 8. 14.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2014. 1. 27.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C에게 건물의 부지를 매도한 사실, 부지 매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기초 철근배근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4. 1. 27.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로 함께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3. 2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각 체결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4. 5.경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14. 8. 28.경 우리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이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 ● 적극재산

피고 B은 2014. 1. 27.경 위 1.의 나. 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가액은 아래와 같이 1,181,444,318원 상당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2014. 1. 27.경 신축공사 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은 약 13.75%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당시 가액은 68,296,593원[=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가액 496,702,500원×공정률 13.75%]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2, 13, 14호증, 을다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B은 2014. 1. 27.경 합계 1,249,740,911원(=1,181,444,318원+68,296,593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	광주시 H 104동 1402호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197,500,000
2	광주시 I 대 74m ²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분의 4 지분
3	광주시 J 대 6m ²	
4	광주시 K 대 1m ²	
5	광주시 L 대 3m ²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6	광주시 M 대 258m ²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282,510,000
7	광주시 N 대 2m ² 중 10분의 9 지분	
8	광주시 O 대 169m ²	
9	광주시 P 대 76m ²	
10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위 순번 2, 3, 4번) 중 10분의 5 지분	347,000,000
광주시 Q 대 214m ²		
11	광주시 R 대 36m ²	

1	광주시 H 104동 1402호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197,500,000
12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위 순번 2, 3, 4번) 중 10분의 1 지분 광주시 N 대 2m ² (위 순번 7번)의 10분의 1 지분	32,982,418
충북 괴산군 S 답 1,369m ² , T 답 1,253m ² , U 대 975m ² , V 전 955m ² , W 전 3,768m ²		
합계 1,181,444,318		

● 소극재산

피고 B은 2014. 1. 27. 무렵 원고에 대한 1,659,568,000원 상당의 사전구상금채무(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구상금은 축소되었다), 청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133,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우리은행에 대한 6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454,044,000원의 사전구상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인정증거 : 갑 제6,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B은 적어도 합계 3,896,612,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소결

위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고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인 점,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의 정당한 대가를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이 13.73%에 이르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제1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등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C에게 위 각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0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가 이후 위 건물이 완공되었는바, 위 계약 체결 당시 건축 중이었던 건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그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 범위

①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의 가액 : 318,854,000원[인정근거 : 갑 제13호증,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7. 17. 기준 평가액이다]

② 위 부동산에 관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 217,270,856원

●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정근거 : 갑 제14호증]

●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위 다. 1)항의 적극재산 란에 기재된 표 순번 2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합계 953,901,980원

순번 2 내지 6번(①부동산)	갑 제13호증	318,854,000원
---------------------	---------	--------------

순번 2 내지 6번(①부동산)	갑 제13호증	318,854,000원
순번 7번	갑 제7호증	397,980원 (=221,1002)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2×9/10)
순번 8, 9번	갑 제6, 17호증	287,650,000원
순번 10, 11번	갑 제6, 17호증	347,000,000원
합계		953,901,980원

● 계산 : 650,000,000원×318,854,000원/953,901,980원(원 미만은 버림)

③ 위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범위 : 101,583,144원(=①-②)

3)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 68,296,593원

4)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①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인 101,583,144원과 이 사건 건물 가액 68,296,593원을 합한

169,879,73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9,789,0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 피고 C는 원고에게 169,789,05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한국웹스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위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4. 1. 27.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 피고 한국웹스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한국웹스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웹스토는, 피고 A에 대한 물품채권 36,321,521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3. 11.경 피고 A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 A 측에서 대표이사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 한국웹스토는 피고 B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위 피고의 채무초과 상태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한국웹스토가 피고 A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는 피고 A임에도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점에 비추어 피고 한국웹스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한국웹스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한국웹스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박지영

판사김신영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사전구상금 및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2015.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전구상금보다 감액된 사후구상금을 특정하고,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은 2014. 8. 8.로서 2014. 8. 28.보다 앞서므로, 지연손해금은 2014. 8. 28.부터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